

의안번호	제2912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2912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우리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5. 5. 31.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대행 업체 선정 필요함.
- 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군민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하수도법 제19조의2
- 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35개소)
 - 설치목적: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과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
 - 소재지: 고성군 일원
 - 시설규모: 50m³/일 미만 7개소, 50m³/일 이상 500m³/일 미만 28개소, 부속시설(맨홀펌프장) 87개소
- 나. 위탁내용: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다. 위탁기간: 2025. 6. 1. ~ 2028. 5. 31.(3년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 경쟁입찰(기술과 가격 분리 입찰)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금2,983,620천 원(3년간)

- 연간 관리대행비: 금994,540천 원(붙임1 참조,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산정)

바. 민간위탁 필요성 및 사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시설 운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련 기술력을 가진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필요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 조作的 특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붙임2 참조)

4. 기대효과

가. 민간기관의 전문 기술력 투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나. 전문 인력 확보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 증대 및 공공수역 환경보전

5. 향후 추진계획

가. 2025. 3. : 도 계약심사

나. 2025. 4. : 입찰공고 의뢰 및 관리대행업체 선정

다. 2025. 5. : 관리대행 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라. 2025. 6. 1. : 관리대행 개시

6. 참고사항

가. 연간 관리대행 운영비 산정내역: 붙임 1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

다. 관계법령: 참고

○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계산서
(단위: 원, 년)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①		605,316,744	60.9%	13명 (고급1, 중급1, 초급1, 초급숙련3, 단순노무7)
경비 ②	복리후생비	38,858,151	3.9%	고정비
	차량유지비	15,885,030	1.6%	
	유형자산구입비	2,002,713	0.2%	
	기타경비	9,605,571	1.0%	
	약품비	4,656,984	0.5%	변동비
	폐기물처리비	25,607,500	2.6%	
	경상수선비	35,988,600	3.6%	
	시험분석비	27,226,020	2.7%	
	안전보건관리비	7,159,531	0.7%	
	소계	166,990,100	16.8%	
순원가③		772,306,844	77.7%	①+②
일반관리비④		38,615,342	3.9%	③×5%
이윤⑤		81,081,162	8.2%	(③+④)×10%
엔지니어링공제보험 ⑥		12,123,924	1.2%	
부가가치세⑦		90,412,728	9.1%	(③+④+⑤+⑥)×10%
총계⑧		994,540,000	100%	③+④+⑤+⑥+⑦

○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연번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는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득한 업체로 기술력 평가를 통한 업체 선택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적정
3	경제적 효율성	민간 전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으로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따른 경제적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기대	적정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사업 공고 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위탁 업체 선정 가능	적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실시로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 사항을 확인 가능	적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환경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됨.	적정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 관리대행업의 전문기술력이 공급되는 운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적정
8	그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필요 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함	적정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